

만화로 알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내 마음은 근아주키!

친구야,
우리 함께
할게지나~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 이 책은 무늬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용 이치만 바코드가 실려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나보고 자꾸 돈을 주면서 빵을 사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시켜요. 빵을 사오지 않거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목을 하고 괴롭혀요.”

정신장애가 있는 민수는 오늘도 친구들의 빵심부름과 청소심부름을 하며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7조)에는
정신적장애인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정신적장애인은 감정의 표현방식이 다를 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거나 즐거운 기분도 같이 느낀답니다.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장애친구를 괴롭혀서는 안돼요.

“학생회장 선거 날, 같은반 친구가 '누구 찍을지 안정했으면 그냥 2번 찍어.'라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도장을 찍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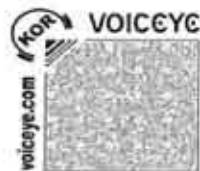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27조)

장애학생이 투표를 하거나 생각을 표현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투표할 수 있어요. 단순히 도와준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친구의 생각을 모두 무시해서는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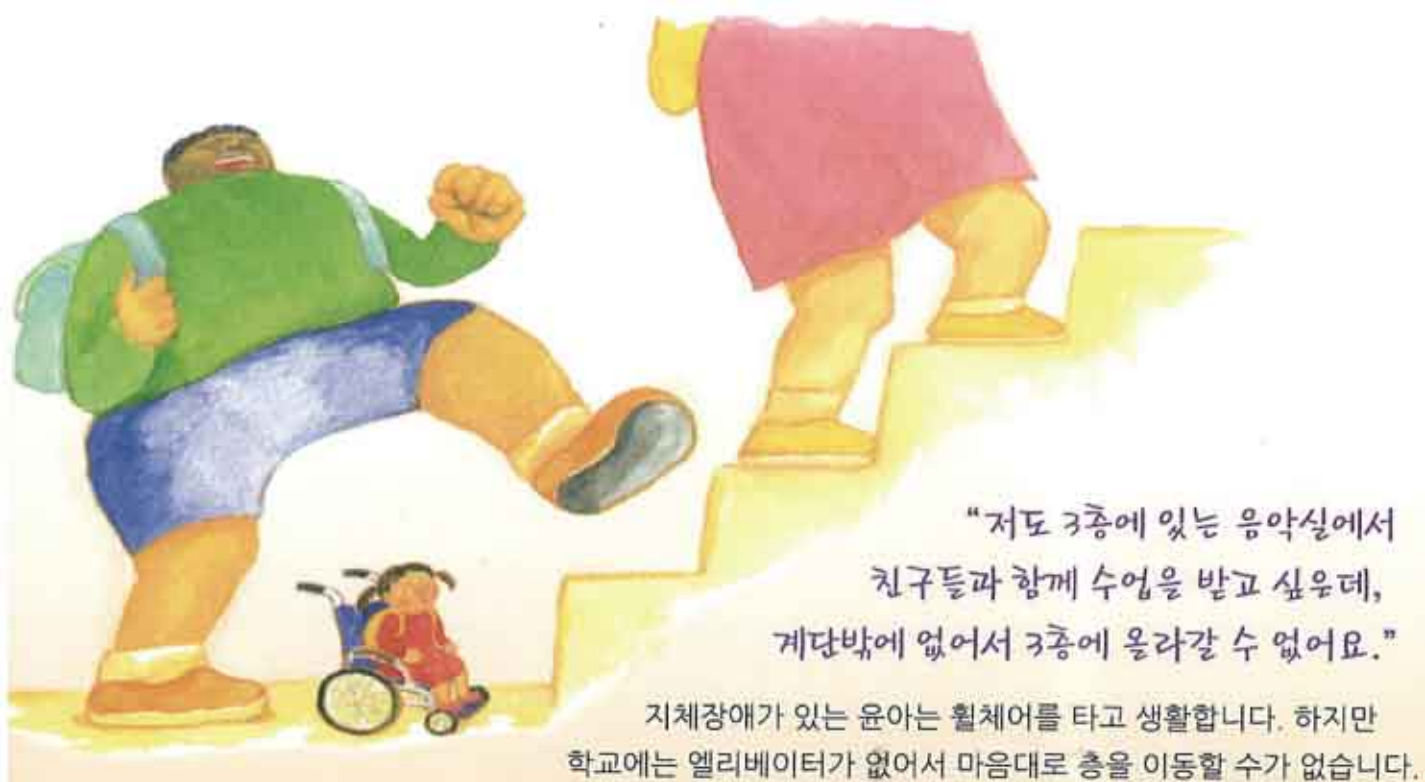
“오늘은 수련회 가는 날이에요.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은 몸도 불편한데 수련회에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친구들과 같이 수련회 가고 싶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제14조)에는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수련회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힘든 극기훈련? 아니면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장애인친구도 똑같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집에서 쉬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함께 가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보세요. 그럼 장애친구도 기뻐할거예요.



“저도 3층에 있는 음악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싶운데, 계단밖에 없어서 3층에 올라갈 수 없어요.”

지체장애가 있는 윤아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마음대로 층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제32조)에는
장애인이 보조견 및 보조기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3층에 있는 음악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수업받고 싶는데 계단밖에 없어서 갈 수 없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하지만 “왜 우리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지? 너무해!”, “힘내!”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을거예요.

“저는 노래동아리 면접을 보러갔는데,
 면접보는 형·누나들이
 ‘장애인이 어떻게 노래를 해.’
 라고 말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결국 노래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제10조, 제11조)에는

장애라는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동아리 면접 등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랍니다. 장애인도 충분히 노래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단지 장애라는 건 그 친구의 특징 중의 하나일 뿐이랍니다. 여러분들의 키와 몸무게가 모두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되지요?

“친구들이 매일 나를 장애인이라고 놀리면서
괴롭히고 때려요. 너무 힘들어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준이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제32조)에는
장애로 인하여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나와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욕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돈이나 물건을
뺏어서는 안돼요. 장애를 가진 친구도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니까요.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수업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민호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 제21조)에는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청각장애인은 주위가 너무 시끄러우면 소리를 잘 들지 못해요. 만약 말을 했는데 친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다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친구를 놀려서도 안되요.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랍니다.